

생산일 : 2000.11.28

보도참고자료

주요내용

-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「2000년도 및 2001년도에
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』
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
- 공적자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
밝혔음

별첨 : 공적자금 제도개선 사항

자료 생산과 :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(500-5341~3)
공보관실(500-5018)

공적자금 제도 개선 사항

기능	투입제도	사후관리제도	회수제도	관리체계
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입과정에서 예보의 적극적인 참여 미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면의결 위주로 운영 ② 설사자료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③ 최적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사후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MOU의 기속력이 약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MOU내용에 노조동의 등이 없어 강제력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MOU 비공개하고 있음(개략적인 내용만 공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권 미행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한 회수여부 점검 체계가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에 한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예보·금감원의 고발후 검찰의 재조사에 따라 원활한 부실책임추궁에 이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 진행에 애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원에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관행 ② 파산재단의 자산 폐각시 감사위원 등의 절차로 신속한 파산 종료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투입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위원회의 구성을 추진(대통령 훈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심의기관으로서 공적자금위원회 ② 12인(정부5인, 민간7인) ③ 사무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에 수사로 운용상화을 보고 등의 절차로 신속한 파산 종료 곤란
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 운영위의 심사기능 강화(자금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재검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정금액이상 투입시 반드시 운영위원회 소집하여 토론후 결정 ② 금감위 실사자료를 예보에 충분히 투명화하고 예보는 이를 다시 검증(또는 실사과정에 서 예보가 공동참여) ③ 금감위는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 제출·예보는 최적대안에 입각한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근거를 문서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지원(Tranche)방식으로 투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해 되 여러개의 Tranche로 나누어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ranche별로 이행조건을 부여 ◦ 이행조건 미달시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진 문제, 우량금융기관으로의 과학적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MOU 내용의 표준화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 기속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MOU내용에 포함될 필수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 재무비율 목표,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설정 수단 노조동의 협력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의 이사선임권 행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외이사 중 일부를 예보 직원 또는 예보가 지명하는 자로 선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점검 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“백각심사소위”를 두어 회수와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주식매각전략을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시예(timing), 최적가격(due pricing)으로 회수하였는지 점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·금감원이 검사팀을 파견하여 부실책임추궁 기능을 강화(법무부와 협의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견된 검사팀이 예보등에 법률자문역할 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에 부여(정부가 제출한 예보법 개정안에 기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: 재경·예산·금감위 장관, 예보·KAMCO사장 + 한은총재 • 민간 : 일병, 행정, 사업부 주전 각 3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속한 파산절차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 ②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사위원 등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투입 원칙 명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소비용의 원칙 준수(설정, 자구노력 전제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소비용의 원칙은 정부가 제출한 예보법 개정안에 기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심의기관이면서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삼의·조정기관 ◦ 15인(정부 6인, 민간 9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: 재경·예산·금감위 장관, 예보·KAMCO사장 + 한은총재 • 민간 : 일병, 행정, 사업부 주전 각 3인 ③ 사무국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(사후관리, 주식 매각 관련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 정기 보고(분기별)